



## 데이터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한 학부모 권리 장전

뉴욕시공립학교(NYCPS)는 귀하와 귀 자녀에 관한 정보의 기밀보호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기록 및 개인 식별 정보, 즉, "PII"의 기밀을 보호하는 연방 및 주법과 규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PII 를 보호하는 연방법에는 [가정의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 [학생 인권 보호 조항\(PPRA\)](#) 및 [장애인 교육법\(IDEA\)](#)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교육법 2-d](#) 은 여러분 자녀의 정보 기밀을 보호하는 주법으로서, NYCPS 및 NYCPS 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의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 기관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규정 A-820](#) 은 지방법으로서 학생 교육기록의 기밀 유지에 관한 여러분의 권리 및 NYCPS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및 법규 하에, 학부모님과 18 세 이상 학생들은 교육 기록 및 PII 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NYCPS 및 NYCPS 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의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 기관에서 저장하는 교육 기록 및 정보에 적용됩니다.

- **자녀 정보를 상업적 또는 마케팅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것으로부터의 안전장치를 둘 권리.**

NYCPS 및 NYCPS 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의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 기관은, 여러분 자녀의 정보를 상업적, 마케팅, 또는 홍보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5 일 이내에 자녀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

교육 기록을 원하시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요청서(학생 교육 기록 요청 양식은 [온라인](#)에)을 제출 하십시오. 귀하의 신분이 확인되고 요청한 기록의 수신이 승인되면, NYCPS 에서는 요청하신 기록 사본을 제공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입니다.

- **자녀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학교장에게 서면으로(이메일도 가능) 요청서를 제출하되, 여기에 변경을 원하는 기록은 어떤 것인지, 현재 해당 정보가 부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믿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변경을 원하는지 등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만약 NYCPS 에서 요청하신 교육 기록 정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청회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귀하께 발송됩니다.

- **자녀의 교육 기록 중 PII 가 공개되기 전에, 귀하로부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요구할 권리.**

그러나 일부의 경우, 법으로 학부모 동의 없이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data-privacy-and-security-policies>.

- **이송 중이거나 저장 시 자녀 정보 보호를 요구할 권리.**

NYCPS 및 여러분의 자녀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 기관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암호화, 방화벽, 암호 보호조치 등의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미국 국립 표준기술 연구소(NIST)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 사이버보안 개선 프레임워크 버전 2.0 등의 업계 표준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 **자녀의 PII 가 침해 또는 무단 공개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통보 받을 권리.**

NYCPS 에서는 귀 자녀의 정보가 침해되거나 무단공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법기관의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60 일 이내 학부모님께 통보할 것입니다.

- **자녀의 PII 가 침해되거나 무단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NYCPS 및 뉴욕주 교육부를 대상으로 불만제기를 할 권리.**

NYCPS 를 대상으로 불만제기를 할 경우, 저희는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답변할 것입니다. 저희가 응답하는데 60 일 이상이 필요하게 될 경우, 귀하께 설명과 함께 답변 가능일을 제시할 것입니다.

NYCPS 불만제기 접수처:

Chief Privacy Officer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Room 308  
New York, NY 10007  
또는 이메일: [Studentprivacy@schools.nyc.gov](mailto:Studentprivacy@schools.nyc.gov)

뉴욕주 교육부 불만제기 접수처:

Chief Privacy Officer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4

또는 이메일: [privacy@nysed.gov](mailto:privacy@nysed.gov)

- **NYCPS 가 FERPA 를 위반했다고 생각될 경우, 미연방 교육부에 불만을 접수할 권리.** 미

연방 교육청 불만제기 접수처:

Student Privacy Policy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

또는 이메일: [FERPA.Complaints@ed.gov](mailto:FERPA.Complaints@ed.gov)

- **매년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

또한 NYCPS 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약속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 및 교육 목적으로, 또는 법에서 허용한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여러분 자녀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
- 모든 학생 정보의 사용이나 공개가 NYCPS 및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
- PII 수집, 처리 및 전송을 최소화 함.
- 여러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NYCPS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 실시.
- NYCPS 로부터 귀 자녀의 PII 를 수신하는 외부 기관과 서면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이 계약서에는 외부 기관의 귀 자녀의 데이터 기밀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적시합니다.
- NYCPS 에서 학생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 기관과의 계약에 관한 보충 정보 게시. 외부 기관이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 및 데이터 수집 사유, 데이터 보호 계획 등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data-privacy-and-security-policies/supplemental-information-for-parents-about-doe-agreements-with-outside-entities>.
- 귀 자녀의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경우, 사본을 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 교육부에서 수집하는 모든 유형의 학생 데이터 총 목록은 <https://www.nysed.gov/data-privacy-security/student-data-inventor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